

부정 ·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범국민적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정 ·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1399번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9번만 누르면 해당 시 · 군구청의 신고센터에 연결되어 부정 · 불량식품과 퇴폐 · 변태 영업을 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의 위반정도에 따라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증거품 제출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제품구입비가 지급됩니다(부패 · 변질된 제품이나 내용물이 부적합한 제품신고시 반드시 증거제품 제출)

또한 신고자,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액 내역

구 분	신 고 내 용 별	보상금액
부정불량 식품분야	무허가 또는 유해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제조 · 가공행위	10만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 판매하는 행위	7만원
	제품검사 불합격품 또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5만원
	부패 · 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3만원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3만원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2만원
퇴 · 변태 영업분야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만원
	휴게, 일반,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5만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	3만원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2만원